

#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인천광역시

#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16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1. 2 . .  
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계약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하도급 업체와 근로자 보호를 위해 현재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등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만 공개하고 있는 계약정보를 1천만원 이상 모든 계약으로 확대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- 나.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행정정보 공표대상 중 계약정보 공개 대상을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규정함.(안 제6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1부.

#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

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의하여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”를 “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인천광역시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시(시 소속 행정기구를 포함한다)”를 “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. 시 소속 행정기구를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외의 본문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,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 하며, 같은 조 제6호 중 “동법시행령에 의한”을 “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본문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,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하며,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.

7.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의 공사·물품구매·용역 계약

제7조제1항 중 “의하며”를 “따르며”로,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8조 중 “「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”를 “「인천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」에 따른다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법 제12조와 「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4조 중 “범위안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,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</u>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의하여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“공개대상기관”이라 함은 시(시 소속 행정기구를 포함한다) 및 시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출자·출연기관(이하 “출자·출연기관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.</p> <p>제6조(정보의 공표) ①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<u>각호의 1</u>에 해당하는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시의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·결산 및 기금 운용계획</p> <p>2. ~ 5. (생략)</p> <p>6. 「지방공기업법」 및 <u>동법시행령에 의한 경영평가 결과</u></p> <p>7. ~ 9. (생략)</p> <p>②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<u>각호의 1</u>에 해당하는 정보는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수시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인천광역시 -----</p> <p>제2조(정의) -----</p> <p>1. -----<u>인천광역시</u> (이하 “시”라 한다. 시 소속 행정기구를 포함한다) -----</p> <p>제6조(정보의 공표) ① ----- -- 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----- ----- <u>따라</u> -----</p> <p>1. -- <u>해당</u>-----</p> 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 <u>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</u> -----</p> <p>7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----- ----- ----- ----- <u>따라</u> 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<p>1. ~ 6. (생략)</p> <p>7. <u>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공사, 1억원 이상의 구매·용역 계약내역</u></p> <p>8. <u>제7호의 공사 설계변경 사유 및 이로 인해 증감된 공사비</u></p> <p>9. <u>도급액 1억원 이상의 공사, 3천만원 이상의 구매·용역 수의계약내역</u></p> <p>10. ~ 13. (생략)</p> <p>제7조 (공개방법)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열람·시청하게 하거나 사본·복제물 교부 등의 방법에 의하며, <u>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 <p>제8조 (비용의 부담) 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<u>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, 그 부담하는 금액·징수절차 및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「인천광역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u></p> <p>제9조 (정보공개심의회설치) <u>법 제12조와 「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령」(이하“영”이라 한다)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정보공개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u></p> <p>제14조 (수당 등)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,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한 자에 대하여는 「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<u>범위안에서</u>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<u>당해</u> 심의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 또는 출석하는 관계공무원·정보공개청구자·이의신청자 등 직접 이해당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	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<u>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의 공사·물품구매·용역 계약</u>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10. ~ 1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 (공개방법) ① ----- ----- ----- 따르며, ----- 따라 ----- -----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 (비용의 부담) ----- ----- ----- ----- 「인천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」에 따른다.</p> <p>제9조 (정보공개심의회설치)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-----</p> <p>제14조 (수당 등) ----- ----- ----- ----- 범위에서 ----- 해당 ----- 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15조 (다른 제도와의 관계) 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<u>의하여</u> 열람·공고·고시·예고 또는 등본·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 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5조 (다른 제도와의 관계) ① ----- -----<u>따라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#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<p>관계법령</p>	<p>□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</p> <p>제4조(적용범위)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.</p> <p>제7조(행정정보의 공표 등)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, 공개의 주기·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,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.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(工事)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</li> <li>3.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</li> </ol> <p>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□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</p> <p>제9조(계약의 방법)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. [전문개정 2009.2.6]</p> <p>□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</p> <p>제31조(수의계약 내역의 공개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계약담당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월별 수의계약 내역을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사업명과 계약이행기간</li> <li>2.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성명, 상호,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</li> <li>3. 예정가격(또는 예정금액)과 계약금액</li> <li>4. 법령상 수의계약의 근거</li> <li>5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내용</li> </ol>
-------------	---



<p>관계법령</p>	<p>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1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. [전문개정 2010.7.26]</p> <p>□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(행정안전부 회계예규 제331호) 제6절. 수의계약내역 공개</p> <p>1. 공통사항 가.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월별 수의계약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. 나. 수의계약내역의 공개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1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.</p> <p>2. 대상사업 가.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</p>
<p>관련법규 정비대상</p>	<p>“해당사항 없음”</p>
<p>특이사항</p>	<p>“해당사항 없음”</p>